

제 1146호  
1985.7.29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영도관  
편집인: 서울특별시청 영도관  
전화: 731-6111-3  
인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: 735-3337

# 시보

## 차 례

◎ 고 시

제 503 호 : 서울특별시교통신호등의 등화배열순서 및 신호기의신호순서 시행에 관한고시 ..... 2

제 504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..... 3

제 505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 ..... 3

제 506 호 : 도시계획시설 (소매시장) 지적승인 ..... 4

제 507 호 :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지적승인 ..... 4

제 508 호 : 도시계획사업 (고속철도 및 부대시설) 시행허가변경(기간연장) ... 5

◎ 공 고

제 433 호 : 1985 년도하반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시행계획공고..... 6

◎ 사 령

공											
합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03 호

서울특별시교통신호등의등화배열순서 및 신호기의 신호순서시행에 관한 고시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신호등의 등화배열 및 신호기 신호순서

의 시행에 관하여 동규칙 부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7. 29.

서울특별시장

1. 공사기간  
1985.8.1일부터 지역별 단계적시행
2. 대 상  
시내 전역에 설치된 교통신호등및신호기
3. 시행내용

가. 신호등의 등화배열 순서 (동규칙 제6조 제2항 별표5)

	배 열	
신호등	등화물 횡으로 배열	등화물 종으로 배열
적색, 황색, 녹색화살표 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좌로부터 적색, 황색, 녹색화살표, 녹색의 순서로 한다.	위로부터 적색, 황색, 녹색화살표, 녹색의 순서로 한다.
적색, 황색 및 녹색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좌로부터 적색, 황색, 녹색의 순서로 한다.	위로부터 적색, 황색, 녹색의 순서로 한다.
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좌로부터 적색, 녹색의 순서로 한다.	위로부터 적색, 녹색의 순서로 한다.
보행등의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		위로부터 적색, 녹색의 순서로 한다.

나. 신호기의 신호순서 (동규칙 제6조 제2항 별표6)

신 호 기	신 호 순 서
적색, 황색, 녹색화살표 및 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기	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, 황색등화, 녹색등화, 황색등화 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.

신 호 기	신 호 순 서
적색, 황색, 녹색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기.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기 보행등의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기	녹색등화, 황색등화, 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. 녹색등화, 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. 녹색등화, 녹색등화의 점멸, 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.
<p><b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04 호</b></p> <p>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</p> <p>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7.2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p>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                     2. 사업주체 : (주)백산대표 이사 김희철                     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내역                      가. 위치 : 강동구 상일동 152                      (고덕택지 개발지구 연립주택 건설용지 1-1)                      나. 대지면적 : 5,224.15                      다. 용 도 : 연립주택                      라. 규 모 : 3층5동 54세대                      6,283.60                      마. 사업비 : 3,345,260천원</p>	<p>4. 사업기간 : 1985.8-1986.5                      첨부 : 1) 사업계획 내역 및 설계도서(생략)</p> <p><b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05 호</b></p> <p>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인</p> <p>1. 건설부 고시 제 218(85.5.3)호에 의거 변경결정된 장실동 82번지 일대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제 754(84.12.14)호로 아파트지구(아시아선수촌)기본계획변경 승인된 아파트지구내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7. 2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

○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지적승인조서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학교	강동구 잠실동 98번지 일대	24,784㎡	아시아선수촌 ( 아파트지구 ) 내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 도면생략 )				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06 호 도시계획시설 ( 소매시장 ) 지적승인			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	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6 호 ( 85. 6. 14 ) 로 결정된 다음 도시계획시설 ( 소매시장 )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			1985. 7. 29 서울특별시	
가. 도시계획시설 ( 소매시장 ) 조서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신설	소매시장	구로구 교척동 269-1 일대	2,877	
나.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 도면생략 )				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07 호 도시계획시설 ( 주차장 ) 지적승인			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	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1 호 ( 85. 6. 26 )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 주차장 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			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	
			1985. 7. 29. 서울특별시	

○ 도시계획시설 ( 주차장 ) 지적승인조사				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 설	주 차 장	명동1가 10-1 및 을지로 2가 195-8 일대	1,498.3	
○ 지적승인 도면 : 별첨 ( 도면생략 )				
<p><b>◎서울특별시고시제 508 호</b></p> <p>도시계획사업 ( 고속철도 및 부대시설 ) 시행허가변경 ( 기간연장 )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2 호 ( 82. 3. 9 ) 동고시 제 219 호 ( 82. 6. 5 ) 동고시 제 544 호 ( 83. 10. 22 ) , 동고시 제 55 호 ( 82. 2. 6 ) 호 및 동고시 제 141 호 ( 83. 3. 11 ) 와 동고시 제 100 호 ( 85. 2. 15 ) 로 허가된 지하철 3 , 4 호선의 건설사업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 1 호의 마목 ,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하고 , 동법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7. 29 서울특별시장</p>				
<p>가. 사업시행지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</p> <p>다. 사업시행 규모</p> <p>라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</p> <p>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</p>				

가. 사업시행지

- 시행구간
  - 지하철 3 호선 : 구파발 - 양재 , 지축차량기지 및 인입선
  - 지하철 4 호선 : 상계동 - 사당동 창동차량기지 및 인입선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류 : 지하철 3.4 호선 건설공사
  - 명칭 : 지하철 3.4 호선 고속철도 ( 본선 및 부대시설 ) 건설사업
- 다. 사업시행 규모
  - 3 호선 : 28.9 km
  - 4 호선 : 30.3 km
  - 차량기지 : 2 개소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
  -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51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재명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

1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 부터 7  
일이내

2) 준공년월일 :  
당 초 - 85. 7.30  
변 경 - 85.10.30

바.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 
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  
리명세 : 별첨 (생략)  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 
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 
주소, 성명 : 별첨 (생략)  
아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  
시 지하철공사 설계실 (대표전화  
583-8923-9) 에 문의하기 바란  
다)

**공 고**

◎ 서울특별공고제 433 호

1985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지방공  
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  
정 제 5 조에 의하여 1985년도 하  
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  
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 7. 29

서울특별시장

1. 명예퇴직 대상자

2 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  
공무원과 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  
원으로서 수당 지급 공고일 현재  
20 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호  
의 1 에 해당하는자

가.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 이  
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

나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  
질 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  
년초과 10년 이내 자진 퇴직하  
는 자

2. 명예퇴직 신청

가. 신청기간 : 1985.9.1-1985.9  
10(10일간)

나. 신청절차 :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  
청기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  
비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 
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.

3.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 
통지

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 
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  
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 
결정하고,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  
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
4. 명예퇴직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

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 통지를  
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  
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

<p>여야 한다.</p> <p>5.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청배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</p>	<p>닌된다.</p> <p>6.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을 참고 하기 바란다.</p>
---	--

사 령

◎ 1985년 7월 29일자

령제 274 호

성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박대수	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 (85.7.29 - 85.10.29 까지 내무 국 대기 근무)	영등포구시민국장	지방서기관

서울특별시장

◎ 1985년 7월 25일자

령제 275 호

감 사 담 당 관      김 동 일  
서 기 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.

대 통 령

지방서기관에 임함.

관악구 부청장 직무대리를 명함.

서울특별시장